제427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 시 회 의 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1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24.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3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o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 3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4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4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 12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 12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12
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 12
1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13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4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4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4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4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4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6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0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51
24. 서류제출요구의 건 ····· 64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장동혁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박형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김남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관 행정실장입니다.

임윤섭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박형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박형수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롭게 간사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10시35분)

○박형수 위원 오늘 간사로 보임된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복귀기는 하겠지만 법사위로 복

귀한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상정되는 이 법안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숙려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회의 시각도 당초 14시에서 10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의 충분한 토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고 오전에 빨리하고 끝내 버리려는 생각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간사로 보임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법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5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춘석 교육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의 효력이 2024년 말로 종료되어 동일한 특례를 신설하고 그 효력을 2027년까지로 하는 내용입

니다.

효력이 종료된 특례조항인 현행 제14조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국가의 부담 비율을 47.5%로 고정하지 않고 47.5% 이내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이 오늘 아침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사항 대응을 위하여 학교의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교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5제1항에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것을 규정한 제2호와 달리 제1호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교육현장에서 관련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제2호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각 행위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향후 3년간 국가의 분담 비율을 47.5%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하반기임을 고려해서 약 47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26년, 27년은 국가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서 국가의 분담 비율을 47.5%로 고정하고 있는 것을 47.5% 이내에서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체계·자구 수정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장님, 교육위 여야 간사님들께서 감사하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차관님, 작년에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법인세 감면 등으로 30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고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청 예산도 5조 5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도 내란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육청 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2024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립한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총 3조 5000억 원으로 올해 결손 2조 원을 메꿀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별로 형편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뿐만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하려고 모아 둔 시설기금에까지 손을 댈 형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차관님,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될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 늦었던 정책인데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교육권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는 차관님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이 2027년까지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올해 편성되지 못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터 원복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국가책임교육 강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당시에 법안에 있었던 47.5%로 못 박았던 국가 부담 비율을 이번 개정안에서 '이내'라는 표현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그러면 국가책임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부담 예산 비율을 법 조항에 조문으로 넣는데 이내라는 표현을 법조문으로 넣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다른 법에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47.5% 이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예산으로 기재부에서 9000억을 승인하건 0원을 승인하건 모두 47.5% 이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대행의 대행, 최상목 대행이 저지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아마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이런 윤석열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것을 바로잡는 법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은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필수라는 것인데요. 예산과 법안을 설계하실 때 차관님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교 무상교육을 47.5% 범위 내에서 국가 책임 예산으로 많이 확보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개정안도 27년까지 한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장기 국가예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책 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

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방교육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예산 등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재정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박은정 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법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고교 무상교육이 되지 못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제가 이 법안을 교육위 간사로 대표발의해서 통과되었고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공평하게 돌려 드리는 방법이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아니,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잘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오죽했으면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이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올해는 하반기분 확보를 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정말 진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이내'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기재부의 요구사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언제나 항상 긴축해서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모아 드리겠지만 기재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고교 무상교육, 아이들의 고교 등록금과 교재비 등 관련해서는 추호의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국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가장 공평하게 돌려 드리는 일이 고교 무상교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아이 하나 더 낳아야겠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법안이고요. 어른들이 '우리 손주와 손녀가 고등학교 등록금 없이 가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 우리 딸과 사위가 큰 부담이 없군요'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높이는 법안 중의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법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실하게 확보하고 교육부

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교 무상교육법이 진행된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법안을 만들 때 국고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민주당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위상이나 교육에 대한 열의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신동욱 위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국가하고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분을 넣어 주지 않으면 시도에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는 필수교육비를 줄여 가지고 이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런 논쟁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교육청마다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몇 년 전의 보도들을 죽 보면 어떤 데는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세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는 교육청도 있고 또 지방교육청 교육감님들과 제가 얘기를 해 보면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7.5%로 고정을 하시면, 각 교육청마다 사정도 다들 다른 것이고 또 유연하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내로 해 주면 최대한 국고에서 보전을 하되 다만 국가재정 능력이라든지 또 각 지방교육청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47.5%로 고정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정됐을 경우요?

○신동욱 위원 예, 고정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정됐을 경우는 종전과 같이 47.5%를, 그러니까 국고분이 947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내'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교육에

쓰는 돈을 막 줄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7.5% 이내로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내가 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신동욱 위원 그것은 자신 있으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신동욱 위원 그래서 이것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최은옥 차관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되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송석준 위원 교육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교육은 국가지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의 기본 틀이나 철학이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송석준 위원 많은 국민들은 또 걱정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와 굉장히 색깔이 다른 교육정책으로 교육 일선에서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의 중립성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가치고요, 저희는 그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소멸 문제 그리고 또 인구절벽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따지고 보면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문제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방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출생률을 저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직생활, 지금 몇 년째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30년 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 교육,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변화 속에서 성장해 오셨고 또 교육정책을 30년 이상 이렇게 다뤄 오셨는데 바로 인구소멸 그리고 또 지역소멸 이것을 위한 나름대로 비전을 잘 정리하셔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 일선에 혼란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비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방소멸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육이 그중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재가 모여 있는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산업 인력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초중등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차관님,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주배경학생, 이른바 다문화학생이라고 하는 이주배경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2014년에 1.07%인 6만 7806명에서 2024년에는 19만 3814명, 그러니까 3.72% 이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 학교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 격차 그다음에 현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 수가 30% 넘어가는 밀집학교라고 하는 것도 거의 한 100개교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학급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정원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주배경학생이 늘어나는 문제는 추세적인 것인데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현황이 이주배경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들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언어 교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 사실은 그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적으로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거고 교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국어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업에 별 관심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 ‘47.5% 이내에서’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복지위 소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은경 장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잘 새겨서 국민 건강과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래는 올해 2월 달에 전체회의 상정됐다가 전체회의 계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때 그 문제점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제가 이것 보니까 지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이게 좀 중복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이 새로운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의사협회는 굉장히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일부 직능단체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두 가지 계류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행안부하

고 협의를 해서요 사무국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존속기간을 5년으로 추가하는 걸로 개정·수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 협의가 완료됐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의료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견이 해소가 되었고요. 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부 의견으로는 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이런 보건의료 단체의 참석 과반수를 항상 보장하는 게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또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실 수 있게끔 추천에 대한 기준들을 보완해서 전문가들이 좀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핵심적인 의문사항,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발전 계획이나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심의를 하는 거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업무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중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업무조정위원회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20개 정도의 보건의료 직역이 있다 보니까 직역 간에 업무 갈등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이게 이대로 가도 이것하고 충돌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회 간에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2)

1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9건 법률안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사일정 제9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교통체계관리계정에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2022년부터 수납한 동 기여금을 세입처리하기 위한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준공이 된 경우에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 및 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중복 문장과 약칭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1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종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경우에 수립하는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대상에 공항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법안의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상경 차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국토부1차관으로 한 달 전에 임명된 이상경입니다.

처음 법사위에 참석하지만 저희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9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경 차관님, 강희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농해수위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및 17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는 농산물 과잉생산 시 농산물을 수매하는 것에 더해 과소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시에도 생산자 보호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가격안정뿐만 아니라 수급안정도 생산자 보호조치의 목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9조 1항 본문 및 단서를 수정하고, 법 제9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8조 및 제14조는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곡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담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3조제2항제5호는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양곡수급계획 포함사항으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정부관리양곡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정부관리양곡의 매입·판매로 규정하면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양곡은 정부관리양곡의 운용대상에 포섭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를 ‘취득·판매’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곽규택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개정안 올라온 두 법에 대해서 과거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의 법안들하고 지금 현재의 법안 내용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

고 그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현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아마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가 행사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조금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하고 관세협상 일응 타결은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축산 부분, 특히 쌀하고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방은 없다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SNS에는 또 뭐가 더 개방된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과태료 특히 그중에서 사과 이런 부분들 현재와 뭐가 다른, 검역이 조금 더 절차를 줄여 가지고 개방 폭이 확대되고 수입량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과채농가에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은 지금 그런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 8월 4일 정도에는 현안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 관세협상과 관련된 제가 질문드린 내용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먼저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통상협상 관련된 것은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협상단이 발표를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공개하신 내용의 경우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로 미국과 우리 간의 농산물의 경우는 99.7%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 절차와 관련돼서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표현이고 검역 절차가 8단계로 진행되고 과학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면 과학적인 역량을 제고한다 이런 것을 조금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협상단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상세한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주신 양곡법과 농안법이 이전에 재의요구한 것과 무엇이 달라졌냐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전에 재의요구 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 그다음에 농안법의 경우에는 과채류의 경우 남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의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좀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양곡법의 경우에는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삽입을 했고요. 농안법의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수

급 안정이 되어야만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특정 채소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포함되고.

그런데 두 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쌀의 경우는 너무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농안법의 경우에도 그런 사전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격 불안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생산비, 최소한의 들였던 생산비와 노임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이전의 재의요구 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합의가 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난 정부 때 낼 때 그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보완해서 미리 냈으면 여야 합의할 수 있고 재의요구 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취지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 같이 동의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한미 관세 협상 잘 봤습니다. 예고됐던 관세를 15%로 낮추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이 합의가 된 것은 이번 정부의 노력이 정말 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쌀과 소고기 말고는 개방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정부 차원의 발표에서는 없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X에서는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말고 다른 품목을 모두 개방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 간에 농산물에 있어서는 99.7%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도 TRQ라는 것 자체가 저율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t을 저희가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방이 돼 있다, 그래서 TRQ도 개방이 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농축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쌀과 소고기 말고도 계절별, 농업인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큰데요. 장관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농업인들에게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과일·채소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한 해 농사지은 것에 대한 전체 소득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사는 문제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장관님께서 품목별로 꼼꼼하게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챙겨 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측 입장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그런 법안인데 쌀처럼 민감하게 보호하는 품목일수록 세밀하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농민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수급 안정, 식량주권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 개정안이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생산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과잉이 발생했을 때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농업 정책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주권 그다음에 식량안보 확보 이거인데요. 쌀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있고 과거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자급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쌀과 함께 핵심 식량작물 자급 정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상 환경, 이번의 관세 협상 포함해서 변화까지 고려해서 앞으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을 미리미리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장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사후적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쌀이 과잉생산이 되거나 또는 가격이 심하게 폭락이 됐을 때 그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사전적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전적 조치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장관님이 타 작물 재배 시에 지원 확

대를 얘기했어요. 이걸 법에 규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타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작물 재배를 어떤 식으로 장려를 해서 그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복안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논에 하계작물의 경우에는 가루쌀도 있었고요 논콩도 있었고 조사료 작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대신 재배하면 직불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수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동안 했던 것은 저희가 2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이 2000억 정도가 추가가 될,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됩니다만 2000억 정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계작물, 이렇게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 단가 그다음에 품목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제고한다라는 것을 아예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논에서 논콩같이 타 작물을 재배하려면 직불금을 드리는 것 이외에도 기반시설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논콩 같은 경우에 배수시설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같이 들어가야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타 작물 재배를 확대를 하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쌀 재배를 하는 것보다 타 작물 재배하는 게 훨씬 더 농가 수익이 많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농민들한테 심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그 인식이 완벽하게 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환하라고 그래도 전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쌀을 과잉생산 하게 되면 지금 양곡관리법처럼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더 전환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제시를 해야 된다. 쌀에 대한 가격 안정제 이것보다도, 안정책보다도 훨씬 더 큰 가격 안정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또 농식품부가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과채류 수입 관련해서 우리나라 검역 단계 8단계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미국 측에도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 측에도 설명을 해서, 우리가 8단계 있는 중에서 지금 자두 같은 거는 1단계고 사과 2단계인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과는 2단계입니다.

○박형수 위원 2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

국 측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짧은 관세 협상 기간 동안에 그것까지도 충분히 납득시킬 여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검역 체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인지 미국 측에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매년 미국하고는 사실 한미 간에 SPS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8단계 검역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이 원하는 우선순위의 품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답변을 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 장관님 말씀 그거는 통상적인 검역 절차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번 관세 협상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쌀농가들은 쌀은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대체작물 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박형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한 보상과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충분치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보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불신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이번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특히 쌀과 소고기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박지원 위원 쌀이나 소고기가 주산지인 지방 언론,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전부 1면 톱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했다, 협상단이 잘했다 하는 평가를 보신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보고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받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절대 실망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찬가지로 박형수 위원께서 질문한 검역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농민단체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검역 단계에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가 이번에 폴란드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물론 진선미 의원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폴란드에 가니까 농업이 특히 농축업이 좋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수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기구 위원장께서 소고기 문제는 한미 관세 협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식을 해 보니까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폴란드산을 수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검토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것도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방위비가 폴란드가, EU 전체 회원국들이 5% 증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가 재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국정원장을 할 때 K9 자주포 등을 수출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역조를 대통령궁 정책실장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말씀 많이 하니까 쇠고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꼭 검토해 주시고 어기구 위원장과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아까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지금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잘 지켜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쪽의 엑스에 나온 것은 또 다른 얘기여서,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여태까지 트럼프의 정치 행태나 이것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혹시라도 정상회담에 가서 이런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협상단 쪽에서 어떤 정보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장관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폭우 침수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봉사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결국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전에 산불피해 있던 데가 이번에 폭우 침수로 피해가 엄청 큽니다. 경작하던 밭들이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피해 때도 그랬고 그러면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런 기후위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엄청 더워서 거의 아열대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농업의 분야에 있어서도 재배하는 작물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작물들의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망고인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부처에서 조금 미리 이런 것을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후지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마 농식품부의 농업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 재배적지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 시설, 말하자면 재해에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해서 스마트화하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품목이더라도 재해를 잘, 폭염을 견뎌 낼 수 있도록 종자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축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축 기간을 늘려서 더운 계절 지나서 수급이 불안하면 비축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이번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이 지난 정부 때는 재의요구 됐던 법안들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완이 돼서 농해수위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어쨌든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될 경우에 의무매입을 위한 막대한 재정 우려가 됐는데 그것을 앞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농안법 관련해서도 수급조절위원회를 가동해서 이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 위원회는 있었지만 실제 제대로 된 수급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요 선제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재배면적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취약한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재해에 대비한 생육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약재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생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이 생기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적으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을 생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재의요구 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라, 차액 지급을 해라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정부로서는 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정 품목의 생산쏠림 현상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니까 소비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농가들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다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두 법을 하게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과거에도 농산물 가격, 결국 이 농산물 가격은 식탁물가하고 직결되고 또 어쩌면 식량안보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 보전해 주고 또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 또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정부 당국에서는 그동안 뭘 하고서 이제서 제대로 하겠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또 농가의 재배, 공급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사후에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뭔가 아직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이 돼 가는데 지금 보면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서 다 할 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는 것 봐서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와 수급조절위원회를 잘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그동안 정부의 실패가 반복해서 보여져 온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가의 현실을, 가 보세요. 지금 가 보시면 이 폭염 속에서 작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농자재값이라든가 농업 생산비용은 정말 국내외 여건 변화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기만 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하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동이 힘든 농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의존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억지로 최저임금을 이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높여 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다 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곶감 빼 먹듯이 농자재 수급업자들 다 가져가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다 가지고 나면 농민들은 매년 손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달란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농안법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생산 한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위원님. 배추밭 가시면 여름에는 저온필름 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것은 온도를 4도 정도 낮출 수 있는 저온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깔려면 기존의 비닐에 비해서 비용은 3배가 더 듭니다. 우리 농가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사전에 도와주고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지, 사전에 그런 일은 없이 그동안은 사후적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패착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 계기로 우리가 사전으로 넘어가자, 사전에 먼저 관리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회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 사전 조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 지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고 한번 별도 보고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회회의록

---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시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에 대한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심사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진흥회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통위가 임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6조 6항에서 진흥회 감사를 이사회 제청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TV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증원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5명의 편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는 그 용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종사자의 범위와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통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관련 학회 및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경훈 장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드릴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I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무한경쟁 시대에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길러 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곽규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송3법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여쭤볼게요.

고생 많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또는 언론 적폐 청산 이런 이름으로 특정 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국민께서 우려하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는 데서도 하나의 이유가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3법이 '방송장악3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외견상 보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 노사 또 이익집단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넓혀 놓고 책임의 주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방송국의 이사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9명 또는 11명으로 이사가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각각 4명씩 늘려 가지고 13명 또는 15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송국의 사장을 정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존에는 사추위를 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MBC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사추위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박준태 위원 지금 이 추천위원회는 새로 설치를 해서 위원들을 100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각각 100명씩 둔다는 겁니다, 방송국별로. 이게 데자뷔처럼 생각나는 게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또는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을 실제로 제출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방송국 이사 숫자 늘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 중에 이전에도 거론이 됐던 방송언론 관련 학회가 2명이 있지만 법 관련 학회 또는 단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공영방송 이사회라는 것이 공영방송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런 경영 관련 학회들은 빠져 있고 단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돼 있지만 문화 창달에도 이바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법 관련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로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문화 관련 단체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추천 단체들이 너무 랜덤, 임의적·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자리 늘리고 우리 편 심고 의결구조를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조랑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허락받아야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장 추천 자체를 노조가 주도하게 되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모두 다 편성위원회를 새로 두라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것 만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마다 편성위원회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박준태 위원 이것을 법에다가 편성위원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동일한 구조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걸 법제화를 하게 되면 민영방송사의 경영권까지 간섭·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편성위원회가 제청을 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정하게 돼 있고요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이 위원회 제대로 설치 운영했는지,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 말 제대로 들었는지를 평가해서 방송 재허가 낼 때도 참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지적한 건데요. 방송법 제4조의2제3항 2호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사마다 종사자 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보면 1호에서는 사업자 추천 5명, 2호에서는 종사자 대표 추천 5명 이렇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규정이 모호해서 사업자가 종사자 대표 추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조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제안은 제4조의2 3항 2호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후에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대통령 임기하고 다른 국가기관·공공기관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좀 큽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그게 흔히 말하는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언론,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바람직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김기표 위원 왜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권의 인사권자에 따라서 이유가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어떤 철학이 사실 비슷해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도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원래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저 혼자만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없이 위원장이 물러나면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법률 운운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법률이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김기표 위원 당연히 그런 법이 규정돼 있지만 자기 임기는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맞아야 되는 취지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것 그것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사 중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물러나시면 됩니다, 법 운운하실 것 없이.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이 사안이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했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발동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숙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이어질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발언권 안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춘석 박준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법을 종결하면 어떡해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토론 종결하셔도 너무 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명 얘기 듣고 토론 종결을 합니까?

(「박균택」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석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한다잖아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행해야지요.

○송석준 위원 토론을 계속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토론 없이 표결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무슨 토론을 종결해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한다는데 왜 그걸 막으세요?

○위원장 이춘석 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해야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 종결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고.

○곽규택 위원 손은 제가 먼저 들었어요.

○신동욱 위원 무슨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토론 종결을 왜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발언 허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발언 요청했잖아요, 저희가. 발언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토론 종결을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해당 동의에 박지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배숙 위원 그래도 토론의 자유는 허락하셔야지요. 토론을 못 하게 합니까?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법안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춘석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법 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저희가 토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토론 종결을 합니까?
○박형수 위원 발언 허가도 안 받고 지금…… 아니,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 아니, 토론을 해야지요. 제대로 토론도 못 하고 이게 뭡니까?
○곽규택 위원 정청래 위원장이 이래요? 참 이런 일 없었는데.
○박지원 위원 조용히해 봐.
○위원장 이춘석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 허가도 안 받은 발언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해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가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언제 발언 허가를 받았어요? 발언 허가 언제 받았어요, 마이크도 안 켜졌는데?
○김용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빨리 들어가세요.
○장경태 위원 체계자구심사와 맞지 않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마이크도 안 켜졌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정식 발언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토론 없이 표결하기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춘석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71조 단서에 따라 위원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발언 허가 언제 받았습니까?
○장경태 위원 토론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박균택 위원이 언제 허가 받았어요?
○위원장 이춘석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저 발언은 유효하고 내 발언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박균택 위원 마이크가 없어도 발언은 발언입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나도 할게요. 나도 마이크 없이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곽규택 위원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 토론을 이런 식으로 종결하시면 야당 위원들 입 막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조배숙 위원까지 발언 들어 봐야지.
○신동욱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어차피 절차가 진행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이렇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춘석 내려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 아니, 무슨 위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뭐 이따위로 운영을 해요, 운영을?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준태 위원 아니, 찬반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토론 종결을 어떻게 합니까?
○곽규택 위원 토론하기로 정해 놨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한 분 들었어요.
내려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니, 겨우 한 사람 토론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종결하면 어떡합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 한 사람 토론하고 발언권도 얻지 않고 토론 종결 요청하는데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박균택 위원 작년부터 수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까지 토론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토론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직권남용입니다, 이것.
○서영교 위원 앉으세요, 이제!
○박균택 위원 1년째 반복돼 온 얘기입니다, 1년째. 1년째 반복돼 왔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래도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하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2년이든 3년이든 절차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춘석 재석위원 중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누구 명령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위원장 이춘석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하기로 지정까지 해 놓고 토론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국회를 왜 열어요, 그러면? 국회를 왜 열어요, 위원장님?
○박준태 위원 강행처리하실 거면 토론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토론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토론을 못 하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 순서까지 해 놓고 왜 중단을 해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저는 법사위 와서 의견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춘석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2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 하려고 지금 법사위 개최한 거예요?
○조배숙 위원 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김용민 간사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춘석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위원들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석 내려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손 드세요, 손 들어요.
○신동욱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서영교 위원 손 드세요, 그냥.
○신동욱 위원 무슨 손을 들어요, 손을 들기는?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서영교 위원 손 드세요, 손 들어요.
○신동욱 위원 장난합니까, 지금?
○위원장 이춘석 내려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방송 민주화법, 민주방송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무슨 민주방송…… 언론파괴법이에요, 이것. 장난하시냐고요, 지금? 뭐가 됐든 토론하고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준태 위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입니까?
○서영교 위원 그동안 신동욱 위원이 방해했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 뭘 방해해요?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만하고 앉으세요.
○위원장 이춘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위원 법사위가 상원이에요? 그만해요.
○신동욱 위원 아니, 상원이 아니라 토론을 하게 해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만해요, 그만.
○신동욱 위원 뭐를 그만해요.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역사가 기록합니다. 이게 진짜 뭡니까?
○위원장 이춘석 예, 다 기록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다 알고 있다고요? 아니, 토론에 참여가 아니라 토론을 하게 해야지요.
○위원장 이춘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민 위원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한다면서요.
○신동욱 위원 참 무책임하십니다. 무책임하십니다. 국회의원 자격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필리버스터만 하면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법사위는 왜 있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이게 무슨, 체계·자구 심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자격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을 1명씩 한 다음에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위원장 이춘석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뭐 거수기들이야? 손만 계속 들고 있어.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법 3개에 대해서 1명씩 토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장경태 위원 토론 너무 지겹게 들었습니다. 지겹게 들었어.
○이성윤 위원 2년 동안 들었어, 2년 동안.
○장경태 위원 2년 동안 들었어요.

○조배숙 위원 토론을 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 과방위에서 다 통과되어 온 법이에요.
○박형수 위원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토론도 안 했어요.
○신동욱 위원 법사위하고 과방위는 다른 거예요.
○조배숙 위원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했어요.
○곽규택 위원 과방위도 일방 통과시킨 것이지.
○박형수 위원 과방위도 일방 통과시켰는데 무슨 토론을 해.
○위원장 이춘석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위원 법사위가 상원인 줄 알아요?
○곽규택 위원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서영교 위원님밖에 없어요.
○박형수 위원 아니, 과방위도 토론 안 하고 법사위도 토론 안 하고 국회는 왜 있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몇 년째 들었어, 몇 년째.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그렇게 방송을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
○신동욱 위원 이재명이나 똑바로 관리해요.
○박형수 위원 아니, 여기서 윤석열이 왜 나와.
○서영교 위원 그만해. 그만 앉아요.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 심사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장관님, 이진숙 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줄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앉아서 신청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서서 신청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계속 서 계시고 하세요.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계속 서 계세요. 계속 서 계세요.
○서영교 위원 절대 앉지 말아요.
○송석준 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조배숙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서영교 위원 절대 앉지 말아요.
○박형수 위원 남이 앉든 말든.
○이성윤 위원 서 있어요, 서 있어.
○장경태 위원 서 있으세요.
○서영교 위원 서 있어!
○박준태 위원 아니, 토론도 안 하는 위원회 운영을 왜 합니까? 정회하세요, 정회.
○곽규택 위원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 1명씩 하고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은정 위원 토론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희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도대체 제가 오랜만에 법사위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풍경이 벌어질까 봐 처음부터 우려를 표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 고개 숙이고 계셨어요. 이미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토론 다 생략하고 통과시키려고 마음먹고 오셨기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던 14시에서 10시 반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지금 토론 1명 했습니다, 1명.

도대체 토론을 하는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아니, 아까 과방위에서 토론했다고 그랬지요. 과방위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됐을 뿐더러, 어떤 분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사위는 왜 있는 겁니까? 상임위원회는 왜 있어요, 본회의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것을 법사위에서 다시 또 하고 본회의에서 또 하고, 이 절차들이 다 보장되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의결되어야지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 사람씩 토론하고 종결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이 국회의 모든 절차를 규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우리 부르지 마세요, 혼자서 다 하시고.

아니, 최소한의 토론이 있어야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은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그러지요. 그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의 충분한 토론, 의견 표명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있습니다. 그 판결을 법사위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제가 여기 법사위 안 올 때 이춘석 법사위원장 전에 어떤 분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은 들어 봤지만 저는 그분보다 지금 못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말 사과하시고……

○이성윤 위원 2년째 충분히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각자의 위원들한테, 모든 위원들한테 절차를 열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당에서 한 번씩 발표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당만 있으면 되지? 말씀이 좀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위원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법이 올라올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이었고 전 정부에서 국회의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다시 내려와서 가결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과해서 저희 쪽으로 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법사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해가 대립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지나칠 수 있어서 제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이 방송통신법과 뒤에 제기되는 노동법은 처리를 해서 저희도 이것을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돼서 했고.

이 절차, 지금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되고 제청이 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결되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음에 예정된 법안도 상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도 한 사람만 토론하고 말겠다고요?

○위원장 이춘석 법으로 정한 절차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07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석 대표로 박형수 간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토론하게 해 주세요, 토론.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그냥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세요.
○신동욱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준태 위원 토론을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토론 있습니다, 토론.
○송석준 위원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
위원장님, 이제 좀 정상화합시다.
○신동욱 위원 토론합시다, 토론.
○위원장 이춘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 뽑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로봇 데려다가 손 들라고 그러세요.
○신동욱 위원 토론합시다, 토론.
○송석준 위원 이제 여당이 됐으면 좀 점잖게 회의 진행합시다.

---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환노위 소관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왜 기회를 안 줘요.
○전문위원 이은정 제22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 후단은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법사위 회의예요. 소수 야당 위원들의 이야기도 못 들을 만큼 그렇게 옹졸한 정당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석 곽규택 위원님 지금 보고합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곽규택 위원 어쩔 건데? 또 퇴장시키게?
○신동욱 위원 지금 무슨 보고를 듣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발언 중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지배력 있는 원청회사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는 판례의 법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곽규택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 곽규택 위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시켜 주고 무슨……
○전문위원 이은정 안 제3조제3항은 법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법한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법을 갖다가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1명씩 토론시키고 끝내요? 그러면 그냥 양당에 1명만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서영교 위원 안 들려요. 시끄러워요.
○곽규택 위원 뭐가 안 들려, 잘 들리는구먼.
○박은정 위원 안 들려요.
○전문위원 이은정 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이은정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섭되지 아니하거나 포섭 여부에 다툼이 있는 노무제공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2조제5호가 노동쟁의의 대상을 24년 본회의 의결안인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변경한 것은 정리해고와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추가하되……
○곽규택 위원 이것 보고 들어서 뭐해요, 토론도 못 하는데.
○전문위원 이은정 24년 본회의 의결안에 대하여 권리분쟁 전반에 대한 쟁의가 가능해지면……
○곽규택 위원 전문위원들 왜 필요하냐고?
○박지원 위원 위원장, 경고하세요.
○위원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발언 끝나면.
○박형수 위원 양심 있으면 경고를 못 하지.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조용히.
○전문위원 이은정 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현장갈등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사위 필요 없다며. 자구 심사를 왜 해요?
○전문위원 이은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허가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춘석 곽규택 위원님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세요.

○곽규택 위원 퇴장 못 시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한두 번 당해 봤어요?

○위원장 이춘석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국회법 15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박준태 위원 진짜 너무하시네요.

○곽규택 위원 그것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

○신동욱 위원 누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힙니까? 그러면 저도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민주 절차를 안 지키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토론도 안 시켜 주면서 이렇게 쫓아냅니까?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위원장님 명령에 따르세요.

○곽규택 위원 지금 여야 1명씩 토론한 다음에 토론 종결하자고 하고, 늘 상황도 똑같아. 박균택 위원님 늘 그것 하시잖아요. 다 짜고 들어온 거잖아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표결해 주십시오. 토론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표결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이 지금 민주적 절차를 어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퇴장을 시켜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이 정도의 토론도 못 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위원장은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곽규택 위원이나 신동욱 위원님은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당신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박형수 위원 누가 법을 어겨요?

○곽규택 위원 왜 말이 안 돼요? 발언 기회를 안 주는데.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을 시켜 주는 게 왜, 토론을 시켜 줘야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토론도 못 하게 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방해했어요? 토론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김용민 위원 그냥 퇴장하세요.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박형수 위원 퇴장하면 좋겠지, 혼자서 하고.

○송석준 위원 원래 상임위는 충분한 토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는 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형수 위원 한 사람씩 토론하고 마음대로 종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민주주의야.

○김용민 위원 그러면 국회법 개정하세요.

○장경태 위원 아니, 한 사람씩 반대토론하고도 표결 참여 안 하고 다 퇴장하시잖아요. 그동안 토론권을 보장해도, 토론권을 줘도 토론, 표결에 참여 안 하고 퇴장했던 국민의힘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곽규택 위원 아니,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야, 발언 기회를.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불가능하니 그냥 표결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토론하면 뭐해요, 표결 안 하고 퇴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안 듣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아니, 지금부터 토론할 거예요.

○곽규택 위원 다 들어 보세요.

○장경태 위원 토론하고도 퇴장하니까 그렇지요. 토론할 것 다 하고 퇴장해 버렸는데.

○위원장 이춘석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십시오. 정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경태 위원 그동안 했던 일, 양치기 소년처럼 그랬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토론권 주면 뭐해요, 퇴장하는데.

○송석준 위원 누가 퇴장을 해, 누가.

○장경태 위원 맨날 국민의힘 퇴장하고, 상습 퇴장범들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도 이게 정리될 성싶지가 않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 토론권 다 주세요.

○박형수 위원 자, 토론해.

○신동욱 위원 다 토론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저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따릅니다.

누가 손을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미리 말씀하세요. 1명씩 하고 또 토론 종결입니까?

○위원장 이춘석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오면 저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가 충족되면 그대로 할 겁니다.

○곽규택 위원 또 박균택 위원님이 토론 종결 하시겠네. 상황 좀 바꿔요, 상황 좀 바꿔.

○신동욱 위원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저 먼저 주세요.

○위원장 이춘석 신동욱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김영훈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신동욱 위원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 만드는 것 맞습니까? 노동부장관이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주주들이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제가 그 내용 잘 알지 못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노동부장관이 왜 그걸 모릅니까?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민영방송에서……
그러면 원칙을 물어볼게요.
민영방송에서 민법상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이것 맞습니까? 노조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 만들게 하는 법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노동부장관이시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안 내용을……
○신동욱 위원 아니,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지요.
○곽규택 위원 원래 자격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 죄송하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법사위 위원답게 질의를 하세요, 법사위 위원답게.
○신동욱 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도 조용히 계시고요.
특히 곽규택 위원님, 발언 허용받지 않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신동욱 위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 법안이 지금 설명하러 나오신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다 노동부장관님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종사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애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저는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민영방송도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무위원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 존중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런, 토론도 봉쇄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존중해야 될 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상당한 기간 토론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경태 위원 21대 국회부터 토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번 국회에서 토론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동욱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 토론했으면 법사위원장이 함부로 토론을 중단시켜서 함부로 표결하는 것 이것 맞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법사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라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위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반대했어야지요.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퇴장시키세요, 빨리.

○신동욱 위원 이 국회는 법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입니다.

○장경태 위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도 다 반대를 못 하는데.

○박준태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세요.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다는 말씀 존중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의회의 여야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 국민들의 의사가 매우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적어도 대한민국 법사위가 이렇게 토론 한 번 못 하게…… 저는 법사위에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사위원장님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토론을 종결합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토론 종결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신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 그 부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님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노동부장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의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의회에서 뭘 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회법에 따라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국무위원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대한민국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K-민주주의, 이게 K-민주주의입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이춘석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빠짐없이 영상에 기록되어 가지고 전 세계 분들이 다 볼 겁니다. 이게 바로 K-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이성윤 위원 내란을 반성하세요, 내란을.

○전현희 위원 내란동조 세력이 할 말이 아니지요.

○김용민 위원 내란 진압 과정이에요.

○신동욱 위원 김용민 간사님, 할 말 없으면 ‘내란’ ‘내란’ 하지 마세요. 내란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기표 위원 내란을 훌륭히 극복한 민주주의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K-민주주의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이고 충분히 숙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은 위원장한테 할 얘기지 노동부장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
○신동욱 위원 아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춘석 발언 기회를 얻지 않으신 다른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 법안이……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국무위원이 보시기에 K-민주주의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통과라는 것은요,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와서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 통과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장관 하시면 되겠습니까? 통과 안 된 겁니다. 무슨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재의가 안 됐을 뿐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이 정부는 그러면 재의권 행사 안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끝까지 완결돼야지 법이 되는 것이지 재의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된 법입니까? 통과된 법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많은 국민들은 그 거부권에 대해서……
○신동욱 위원 그것은 국무위원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못 알고……
○신동욱 위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다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장관님, 현장 최고의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법안인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2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2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날밤을 새우는 토론이 있었던 것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 문제에 대한 시비도 더 이상 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안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대유위니아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형 화재가 나서 제2공장 큰 공장에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난 6월에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노동계·시민단체도 나섰고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8명도 다 나서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금호타이어가 노사 합의를 거쳐서 고용승계와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재가동에 대한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사 간의 합의에 불과할 뿐 이게 실현되려면 정부 차원의 또 광주시 차원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광주 광산구 또 전남 여수 등 예기치 않은 고용위기지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7월 25일 날 현장 실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아주 반가운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고용위기 조짐이 보일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춘석 예, 토론.

○곽규택 위원 지금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이 올라왔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분명히 체계하고 자구는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노동조합법 내용 중에 분명히 위헌성이 있는 자구가 있고,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체계에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방송법에도 민영기업에까지 경영상의 어떤 자율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위헌성이 다분한 문구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체계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2소위에 보내 가지고 그 문구가 위헌적이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가다듬는 게 법사위의 당연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토론을 다 준비하고 지금 입장을 내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전에 약속한

듯이 한 명 한 명 여야 간에 토론을 하자마자 토론 종결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방 표결시킨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신임 노동부장관 나와 계시지만 본인의 소관 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고 소관이 아니더라도 노동과 관계된 다른 부분이 있거나 노사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법에 특이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K-민주주의가 뭡니까? K-민주주의 꼬라지가 이런 겁니까?

법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조 5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부분 외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 부분이 지금 노동쟁의에 포섭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한번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 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 불법파업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서 헌법적 가치와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리해고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쟁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정리해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해외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장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사업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것은 케이스,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고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예컨대 지금 구미에서 6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옵티칼 같은 경우도 화재로 인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고용 문제를 교섭 대상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 아니, 해고 문제 말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해외투자를 한다든지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장을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있는 조건도 있고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 노조법에 처음 들

어오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좀 구체화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요.

처음 들어오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처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봐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열어 놓으면 사실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 기업의 그런 원칙과도 안 맞는 거예요, 헌법 원칙하고. 당연히 위헌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계속해서 파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조항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조정을 전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전치주의, 즉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것이 파업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노란봉투법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상 노동3권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서영교 위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월급봉투 색깔,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란봉투법, 이 노조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도 보장되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람들은 모든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 노조법이 되게 된 것에는 쌍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쌍용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국민들께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어떤 삶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아팠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경영에는 문제가 없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더 원

활히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의 유래가 노란봉투법이 되었던 것은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발생되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광주학살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과 대테러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서영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정리해고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교섭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불법의 굴레에 씌워졌고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 청구된 손해배상을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노란봉투, 월급봉투에 넣어 주자는 취지로 이것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이 가지는 순기능은 교섭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화가 필요한데 기업에서부터 원하청이 교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최상층의 교섭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부터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OECD도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켜 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영교 위원 원청 노동자가 더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원청 노동자……

○서영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청의 노동자는 부자고 지위가 높고 하청의 노동자는 노동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지위가 낮고 계급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청노동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 있고 현대자동차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여러 업체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현대 노동자들인 거지요. 그들이 하청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원청인 현대자동차하고도 교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바로 노조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사무원하고 직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동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잘 풀리듯이 왜 안 되느냐, 그 직원에게는 그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면 또 꼭 풀어 줘야 될 문제는 풀어 주듯이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도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원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법이다.

그리고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그 노동자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두고두고 30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없애자고, 그렇게 개인에게 물리지 않게 합법적인 경우에 하는 법이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렇게 국민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꼭 통과시켜 주기

를 바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발언이 끝났는데 이 상임위는, 우리 법사위는 언젠가부터 체계·자구만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잘 만들어서 체계·자구에 수정 정도만 하고 넘겨 주는 그런 관례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토론 신청합니다. 중요한 법안인데 이걸 이렇게 토론 종결합니까?

○송석준 위원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토론 좀 하고, K-민주주의 아닙니까? 토론 좀 합시다.

○위원장 이춘석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곽규택 위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K-민주주의 참…… K-민주주의 끝내준다, 끝내줘.

○위원장 이춘석 이성윤 위원님 등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 없는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토론 없는 국회가 뭐가 필요해요?

○송석준 위원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주한미상의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외국도 상공회의소에서 문제 제기하고 APEC에도 이런 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일 게 뭐가 있어요?

○조배숙 위원 토론 좀 합시다.

○박형수 위원 토론하자는데 왜 토론을 못 하게 해요? 뭐가 그렇게 꿀려서 토론을 못 해?

○위원장 이춘석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김용민 위원 아닙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거 충분히 토론을 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결 인정 못 해요! 토론을 하고 표결하셔도 되잖아요. 토론하고 표결해야지, 토론하고!

○장경태 위원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퇴장하셨으니까 국민의힘 환노 의원들한테 따지십시오.

○박형수 위원 뭐가 겁나서 이렇게 토론을 못 하게 해요?

○조배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영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법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토론 보장을 안 해 줬다고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1년 넘게 계속해서 국회에 논의가 됐고 이제는 저는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법사위에서는 안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곽규택 위원 저는 토론한 적 없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토론한 적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국회의원이 각자가 토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래서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2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 및 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장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검사 1인과 수사관 1인이 가서 인치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구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까, 국민이힘이 말하던? 저는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성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에게 소환조사 통보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덟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김건희 특검 TF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차 구속기간 중에 변호인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이 넘고요,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1차 구속기간에만 49일 동안 292명을 접견했고 횟수는 151회가 넘고 시간은 341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또 19일밖에 안 되는 2차 구속기간에도 56명을 접견하였고 접견 횟수는 40회에 이르며 접견 시간은 53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접견 인원들도 보면 윤상현 의원, 권영세 의원, 김민전 의원, 이철규 의원, 김기현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실장과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부속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민감한, 일반접견이 아닌 특별접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초과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루어지는 등의 내용도 있어서 정말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하루 많게는 하루 39명까지도 접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구치소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피의자로서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접견 과정도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조사실에서 접견을 해 왔다는, 경호상 이유라고 합니다만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접견실은 위험하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정된 특별접견의 횟수가 규정을 초과한 때에도 구치소장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는 등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입 맞추기 접견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접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횟수만 주시고 접견 시간과 접견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저는 어떤 게 개인정보인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 달라는 입장이 있어서 제가 그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서 위원장께 우리 법사위의 의결로 법무부에 자료 요구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방첩사가 국정원, 경찰, 심지어 법원에까지도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을 했었는데 과연 친정인 검찰에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도 '선관위에 곧 포렌식할 검찰이 올 거야'라는 증언까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검의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과학수사부의 출퇴근 기록을, 계엄 당일 12월 3·4일에 있었던 출퇴근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직자의 출퇴근 기록이 개인정보입니까? 제가 집에 언제 귀가했는지 귀가 시간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출근을 언제 했는지, 퇴근을 언제 했는지 달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인지 솔직히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는 내란과도, 아주 위법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대검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결로 법무부에 해당 자료 요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의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양당 간사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4시09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2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7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당초 의안의 내용 중 별개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처리·공포된 사항을 삭제하고 집중투표 배제 관련 주주총회 절차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법안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하고, 상법에 대해서 의결하고 현안질의가 있으신 분은 상법에 대한 의결이 끝난 후에 현안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오늘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된 방송3법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그게 어떻게 통과됐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저희 야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도 토론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저희 야당 위원들이 오늘 출석한 사람이 전부 6명입니다. 그러면 5분씩 줘도 30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이 뭔가 마음을 먹으면 표결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안건에 대해서 30분, 그거를 토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러는 게……

장관님께서도 법사위원 그때 해 보셨잖아요. 여당일 때도 해 보시고 야당일 때도 해 보시고 그러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통과는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정말…… 제가 아까 오전에 그걸 보면서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장관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과정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여당이 이 토론 과정에서 이 법안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이 알려질까 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1소위에 참여를 했는데요.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김성원 의원, 구자근 의원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어요. 지금의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이랄지 그다음에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이거는 미국에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과 같은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 법을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오늘 상정된 개정안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 국회법의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국회법의 정신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명이니까 5분씩 하면 30분입니다. 그리고 두 안건이라고 하면 1시간이거든요. 그 1시간도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 올라온 거는 장관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물론 그동안에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소수주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한 점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지금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서 우리가 먹잇감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채택하려고 하는 두 제도,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외국에서 수용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폐지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폐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폐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단점을 알면서 구태여 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려고 하지요? 역사는 시행착오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시간과 이런 것을 더 절약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걸 도입해 갖고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면 저 사람들이 왜 폐지했었을까요, 선진국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배주주가 사실은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선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공급망 애로로도 힘들고 또 더구나 지금 한미 통상협상에서도 나왔지만 관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은 아주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그야말로 내우외환,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금 정부는 어쩌면 우리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고 또 어쩌면 국가세수에 가장 기여를 하는, 나라 재정살림에 가장 기여를 하는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고도성장의 중심에 있던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경제, 구석구석 돈의 혈을 돌게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애로를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옥죄고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가 옥죄려고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고요.

○송석준 위원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석준 위원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외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이런 것 이미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고.

심지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서, 감사위원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의 성장 또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기들의 설정한 기간 내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을 왜곡하고 경영을 옥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다 그럴싸하지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해 보니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기자본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하려다가 안 했던 건데 이 정부 들어와서 주가 요새 오르니까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 주가 폭락한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언론보도 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에…… 오히려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각료 되셨으니까 직시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타위법에서 이번에 노동관계법,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거지로 통과가 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달리, 오늘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이 시행이 됩니다. 정말 악법이 시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 꼭 그 무서운 결과를 눈으로 보고 또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보셔야 다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노동관계법을 손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고 모범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며칠 만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죽이기 법이 오늘 이 자리,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상법으로 또 기업들 옥죄기를 합니다. 명분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기업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에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거나 기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리야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상법 문제보다는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다만 타 상임위 법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상법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농업 관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개혁입법인 노란봉투법이나 또는 방송법, 지금 얘기하는 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폭락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미국과의 통상 협력에서 잘됐는데, 물론 FTA에 의거해서 자동차는 우리는 프리 관세였고 일본은 2.5% 냈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3000대를 훌쩍 넘어 있다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상법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 행사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개혁입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통과를 시켜서 현실적으로 한번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경제 질서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오히려 상법 개정안이 소수의 지배주주들의 어떤 전횡들을 막아 갖고 또 소액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이재명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장으로 어제 귀국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외국 노동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외국 노동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특히 지금 시골 농어촌에는 계절노동자 때문에 농사가 또 어업이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분들 때문에 경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노동자가 이번에 제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목포 출장사무소에서 인력 증가는 됐지만 족탈불급입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광주가 아니고 서남해안에 그러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관리와 업무 관리를 위해서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할, 그래서 인원을 좀 배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목포·무안 출장소를 합쳐 가지고 사무소로 승격시키면서 인원·조직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또 기재부의 협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협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남은 인구가 6만 4000인데 해외 노동자가 1만여 명입니다. 완도는 5만인데 해외 노동자가 칠팔천입니다. 진도는 2만 7000인데 해외 노동자가 6000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농사나 어업을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이 전부 스톱된다는 것 잘 아시고 또 이분들이 급료를 받아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남해안의 해외인력 관리를 위해서 꼭 사무소로 승격을 하시고 또 인원도 잘 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처리하는 몇 가지 법안을 둘러싸고 소란이 좀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방송법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법무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최소한 이게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방송법 같은 경우에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방송이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나치게 휘청거리고 이것 때문에 회사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분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영방송의 문제, 민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보도 전문 채널이요. 완전히 민영방송

입니다. 예를 들자면 YTN 같은 회사는 완전히 민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는 보도채널 대표자를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설치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뽑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경영 공백이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민폐가 되는 방송 또는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경영을 잘못해서 그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방송, 이런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영회사의 사장, 경영권을 이렇게까지 훼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해당 방송사들이 헌법소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따로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고민 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또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아까 주가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기업이 다수, 그러니까 주주 다수 또는 국민 복리를 위해서 기업이 잘 운영돼야 된다는 그 대전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지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되고 또 그렇게 잘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소위 재벌이라든지 또는 기업주의 경영권 방어 쪽에만 집중적으로 포커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뽑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경영권이 취약해졌을 때 감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회사가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재계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단기 차익만을 노린 외부 헤지펀드 같은 것이 기업을 공격해 가지고 기업의 내실을 다지지 않고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 주가만 잔뜩 부양해 놓고 본인들은 차익을 가지고 떠나 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위험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이 되어 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돼서 이 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험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중을 위하는 법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이 되면 정말로 다중의 이익을 해치는 악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주의 깊게 계속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 저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더 센 상법입니다. 이게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또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들을 내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이 장기투자 또 기술, 인재들이 축적되는 이런 경영환경을 단단하게 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단기적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영 판단상의 오류나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부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주식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만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새로 입법을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 모를까 기존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먼저 합의된 부분은 처리하고 또 그때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 입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이라는 게 결국은 개정된 안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국민들 삶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입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사전에 계획해 놓은 대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강행해서 하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했거나 무시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또 기업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야 투자하기 좋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예고는 해 왔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좀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 경영전략을 세웠을 텐데, 지금 재계 전체가 나서서 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들을 민주당이 정말로 성공한 정부를 운영,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장관님께서, 또 그만큼의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영향을 갖고 계신 장관님께서 이런 우려들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규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내 기업들한테는 미국에 투자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높이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 상법까지 지금 더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옥죄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경영도 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진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그

주장이 진정성 있는 말씀이라면 기업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이 개정안이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오기 전에 민간의 일을 할 때요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을 다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선의로 이분들의 활동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게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더 건전한 구조를 만든다 이런 좋은 명분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시민사회운동하시는 분들처럼 막 합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언론에다가 뭔가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져와서 주장을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것처럼 또 깨끗한 기업 만드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바꿨으면 좋겠느냐는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면서 협의하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바뀌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부양되는 환경을 의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본인들 주식 다 팔고 떠납니다. 그러면 주식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이 우려를 조금 더 숙고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상법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 추가 이거 한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 무너지거나 도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서서히 그 영향들이 축적돼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조법 개정 이런 것 다 같이 조금조금씩 우리가 투자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단 이 상법 개정안은 1차 개정 때 여야가 합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1차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그 개정을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기업이나 경제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2차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혀 없는데 지금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지금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주에서 과거에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22개 정도 주에서 채택했다가 나중에 다 다시 정관으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귀했어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했다가 다 자율로 하는 것으로 회귀하고 25% 대주주만 집중투표제

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남겨 뒀어요.

이 제도가 기업이 발전되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 기여를 했더라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3% 룰이 적용되는데 그것 역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그 부분이 부득이할 경우에, 투명성을 위해서 부득이할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런가 그리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등에 이런 제도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는 충분히 숙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조법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 지금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습니까? MASGA잖아요. 조선업에 대해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타결해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에 하청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대우조선만 해도 이천 몇백 개가 된다고 그러고 삼성도 1000 몇백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 많은 하청업체가 어느 업체와 교섭을 해야 되고 교섭을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국민들께서도 사업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지금 쟁의행위 대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순서를 좀 바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법사위에서 그냥 환노위에서 온 대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충분히 연구를 하십시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모든 파업을 다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법무부도 안을 내고 여야 위원들도 더 저는 숙고를 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장관님, 상법은 법무부에서 소관하는 법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고요 또 예상 가능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상법 부분,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뭔가 대응을 하거나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지 ‘우리 경제에, 기업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법무부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번 개정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TF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상법 개정을 할 때 그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오늘 논의하는 안까지도 원래는 여당에서 다 하자고 했지만 기업의 부담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우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다른 조항들은 배임죄의 완화라든지 또는 신주인수권 제한하는 그런 경영권 방어장치를 같이 논의해 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같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하자, 이야기를 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1차 개정이 되자마자 다시 지금 배임죄에 대한 어떠한 보완도 안 된 상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어떠한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 상법을 개정하자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재계의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금 올라온 상법 개정안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안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관련해서는 저희 차관이 법안심사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을 테고 저희들도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 배임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취임 바로 직후에 검찰에 굉장히 신중한 적용을 저희가 주문했고요. 검찰에서도 기업인들이 어떻든 그런 불안감을 갖

지 않도록 이미 지시를 내려 가지고 실무 운영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보완책들과 함께 2차 상법 개정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뭐 국회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여기 왜 나오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의 입장은 이미 사전에 다 전달은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장관님, 뭐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은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장 길면 5년 근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장으로 길면,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임기가 지나가고……

○곽규택 위원 예, 그러니까 최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상법 같은 경우나 오늘 오전에 일방 통과된 노조법이나 방송 3법이나 이런 법은 한 번 개정이 되면요 앞으로 한 이삼십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다 하면 기업층, 재계 쪽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했었습니다. 지금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이 상법 개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기업 쪽의 의견을 듣거나 재계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니 이것을 꼭 도입해 달라는 어떤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는 그런 만남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관 취임 전에는 제가 많은 기업인들 만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 충분히 들었고 또 당에도 전달했었습니다, 사실은 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좀 더 얘기를 하지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이것 처리하지 마시고 상법은 각계의 목소리를 좀 골고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사실은 우리 고유법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공청회 등을 거

쳐서 추가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가지고 있으면 또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관계 단체로부터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된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동의하시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 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의결하고 또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보완책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장 이춘석 이상으로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라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간사분들께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민 위원 합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4. 서류제출요구의 건

(14시53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서 윤석열 구치소 접견 관련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서류제출요구의 건이 아마 접견 명단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지금 요청을 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를 접견을 했는지, 면회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서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고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한다면 누가 누가 접견했다라는 것을 공표한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든지 이렇다라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알아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특검도 하고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각자의 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의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피의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5200만의 인권을 윤석열이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경태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했지만 무려 395시간에 348명을 접견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알고 싶은 겁니다.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밤 9시 45분까지 윤석열에게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윤석열을 접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에서 공권력을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는, 사법부의 체포영장을 왜 이렇게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법무부장관에게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해 주고 윤석열,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윤석열 구치소 접견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는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필요하면 국회의원이 위원회든 개별 국회의원이든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얼마든지 궁금한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를 같이 끼워 넣어 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지 이게 도대체, 저는 전례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받아 보자고 합의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것이지요. 저희 당이 원치 않는, 이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자료제출을 왜 저희 당까지, 이걸 굳이 표결로 강행을 해서 저희 당 위원의 이름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지 일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궁금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 본인이 궁금하시든 위원장님이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하다고 해 가지고 제 이름을 같이 넣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경태 위원님이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준다고 해서 국회법에 정한 절차로서 몇 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한 것이고 채택 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하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는 국회법 제128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법무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박지원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 하면 또 말씀의 내용을 하니까, 박은정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고 현안질의는 5분간 하는 걸로 그렇게……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는 합의가 된 사실이 없는데……

○박준태 위원 안건에 없는데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석 아니, 현안질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처음에 할 때 이게 사실은 대체토론을 하는 동안에 현안질의와 보통 같이 하는데 제가 법안의 신속성을 위해서 법안과 관련된 대체토론을 하고 혹시 현안질의가 있으신 분은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법의 표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아까 의사 진행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는 대체토론도 못 하시게 하고 지금 무슨 현안질의를 또 이렇게 자애롭게 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석 아니, 저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동욱 위원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시라고요, 일관성 있게.

○위원장 이춘석 아니, 상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토론을 보장했고 앞에 말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그 책임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 상임위 법도 아니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현안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우선 자료를 받아 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 1차 구속 그다음에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차 구속, 19일 동안 수용된 기간 중에서 68일인데요.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바에 따르면 총 191회에 걸친 접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348명이 접견을 했다는 건데 장관님 이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전혀 모르시나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정도,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6일 날 특검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 접견은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장소 변경 접견이나 1차 구속 때는 일반

접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접견을 안 했다면 하루에…… 제가 얼추 계산했더니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4회 정도로 막 접견이 이루어졌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하루에도 몇 차례의 장소 변경 접견을 시켜 줬다는 건지.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에도 인원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348명이면 이것이 가능한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특혜성 수용을 하고 있다,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완전 무법 천지의 수용을 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장관님.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장소 변경 접견이었는지 파악은 안 되셨다는 거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제가 검사하면서도—그리고 게다가 또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의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소환에 불응해 가지고서 그걸 교도관의 어쨌든 지시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박은정 위원 아니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요. 수의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내부의 지침 위반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과가 시작되면 통상적인 수의를 입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규정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지금 수용률이 과밀 수용인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몇 퍼센트 과밀인지는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구치소만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한 125 내지 127%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서울구치소는 152%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수용되어 있는 이 방에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용실은 한 8명 들어가 있거든요. 혼자 지금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양옆은 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비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거는 일반 수용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접촉 차단의 이유가 뭐지요? 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전에도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는 대개 그런 정도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서울구치소 과밀 수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혼자서 지금 방 3개를 차지하면서 속옷 바람으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런 반법치·무법이 지금 장관님이 계시는 법무부 내의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개인적으로 참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규정들을 검토해 가지고 좀 적절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은 장소 변경 접견 등 특별 접견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법무부 내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뭔가 징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지금 사실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수의를 착용해야 될 의무가 현행법상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 위반이 아닌지를 지금 교정본부장이나 누가 오셨으면 좀 빠르게 확인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장관님, 어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방문에서 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행해지는 시간이나 장소 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특혜가 사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접견 시간을 보면 근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6시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이고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을 한참 초과한 9시 45분까지 접견을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접견을 했더라고요.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는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일반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관이나 검사가 피고인 수용자들을 조사하러 갔을 때 사용하는 공무상 조사실, 그 장소를 이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장소는, 변호인 접견실은 굉장히 좁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데 공무상 조사실은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이용을 한 것은 이건 명백한 특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특혜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뭐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 접견 허용도 좀 사실상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정진석 전 실장이나 국힘의 다수 의원들과 특별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왜 허용이 됐냐 이러니까 별건 수사 혐의가 없어서 허용을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서울구치소장은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특별 접견을 불허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소장으로 와서는 사실상 허용을 하는 이 원칙이 매우 들쭉날쭉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규정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이런 여러 가지 다수의 특혜 의혹이 저희들이 현장 점검한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체포 영장이나 또 특검의 조사 구인에 불응을 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구치소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특별히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에 이상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없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도 사실상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대통령이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구치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특검 측이 조사를 요구를 할 때 구인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이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야만이 자신들이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구치소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침이 없어서 이런 인치나 강제 구인에 협조를 못 한다면 법무부의 내규 지침을 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좀 잘 살펴 주셔서 국민들이 이런 허탈감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님께서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한번 면밀히 살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누구도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서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십거리로 희화화되지 않게 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억지로 망신 주기, 억지로 강제 집행 이런 식의 불공정한 행위는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 경제악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방송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법 중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 여기에서는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노사관계의 존립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이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노동관계법에서 바로 사용자의 범위를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사용자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 모든 사람을 원청 사업주로 이렇게 노사분규의 당사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노조의 범위에는 근로자,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하지 않은 일반 시민단체 소속이라도 노조에 가입을 하면 같이 여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려서 직관적으로 관련되면 뭐든 원청이든 직접 계약을 했던 당사자든 다 분규의 대상자가 되고 또 노조가 직접,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에 같이 가입된 사람이라면 외부인이라도 누구든 또한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업 현장을 아주 노사분규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노동쟁의행위의 범위가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이제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사측과 노동계 쪽 모든 범위도 넓혀 놓고 또 모든 경영활동과 모든 근로조건을 다 대상으로 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마음 편하게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로서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어 온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정말 머리띠 싸매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야말로 가방 하나 들고 해외시장을 누비고 또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 일자리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또 지역 경제 살리고 또 이렇게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한 게 바로 이 기업들인데 기업인들이 이제는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1년 365일 하루 24일 내내 노사분규 고민만 하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노동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고용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노동자의 권익도 있고 노동자의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고용해 줄 기업들이 이 불안한 환경에서는 스스로 도저히 더 이상 경영활동을 못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업을 그만두거나 해외로 떠나 버리면 이 땅의 일자리, 이 땅의 노동자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정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인건비 올리고 52시간 강요하다가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소상공인들, 중소 자영업자들 지금 다 문 닫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폐업도 못 하고 있대요. 이미 지난 잘못된 노동,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서민경제가 망가져 있고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잘 나가는 기업들까지도, 관세장벽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에게 이렇게 또 노동규제로 옥죄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사용자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또 노동자 범위를 넓혀서 또 모든 경영활동까지도 다 노사분규의 대상, 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노사분규 천국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소멸될 것이고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의 천국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될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정직하게 한번 말씀드려서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중간에 절차 진행 멈추셔서 빨리 폐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께 노란봉투법 소위 노동관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해 주실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들을 상당 정도 반영해 갖고 입법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거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대책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노사가 화합해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고 나면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국민들만 불행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위원님들 손을 드신 순서대로 질의순서를 먼저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순으로.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저희가 오늘 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이 통과되고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3000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3200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3300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나와 계시지만 주식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주식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식 하

면 다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전부 다 미국채에 투자합니다.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오늘 상법이 마저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검증된 것이고 윤석열이 다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노조법 2조·3조, 그러면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기업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제가 한 예로 들어서, 포스코의 하청기업인 포운이 있었습니다. 포스코와 포운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서 실행되지 않아서 포운이 464일 동안 농성을 했고, 고공농성했습니다. 제가 그 포운을 도와서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 포스코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포스코에서 '이것 우리가 들어드리지요'라고 해서 그대로 해결이 됐어요. 원청하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서 중간에 있는 사업주가 눈치를 보느라…… 하청 노동자들은 기업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사업주가 잘 이해가 돼서 서로 소통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원청과 노동자가 같이 소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는데 그 합법적인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몇십억씩 물리면 어느 노동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 나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소중한 법을 몇 년 만에 통과시켰으니 잘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석열, 정말 충격입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이성윤 위원께 여쭤봤어요, 검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속옷만 입고, 위에는 러닝만 입고 밑에는 빤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누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폭들이 그런답니다. 평범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어서 체포영장 넣어서 '가자' 하면 순순히 따라온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속옷만 입고 과시하고 누워서 이러는 자들은 조폭이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입장은 재판 결과에 좀 불만이 있거나 입장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수사……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받았어요. 체포해서 나오라고, 수사관이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각팬티 입었답니다. 사각팬티 입고 누워서 발버둥 친답니다, 안 나온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와서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장 넘기면 이 윤석열, 총 접견 인원이 348명이었답니다. 안 나온다고 발버둥 친…… 잘 들으세요, 1시간 후에 가서 접견했답니다. 예? 이러고 대한민국에 불법 비상계엄을 친 자,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그리고 최고형 맞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 윤석열 하루에 39번 접견했답니다.

한번 띄워 보시면요 접견실, 39번 접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특혜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접견실이 아니라 이런 조사실에서 접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언제까지 이렇게 특혜를 받고, 이 특혜가 전부 다 불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 망신시켜서 되겠습니까?

저는 접견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접견 명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엄청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서 제발 속옷 입고 발버둥 치는 일 없게 좀 조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벌써 명단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서영교 위원 명단 많이 나왔어요.

다녀오셨나요?

○곽규택 위원 가지고 있는데 왜 달라고 그래요, 또?

○서영교 위원 다 안 나와서.

○송석준 위원 언어 순화 좀 해 주세요. 빤스가 뭐예요?

○서영교 위원 나도 말하기 쑥스러…… 거북해요.

……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상임위에서 잠시 장관님 의정활동을 보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국회의원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무위원이 되셔 가지고 국회 상임위장에 오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는 일관되게 국회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늘 잘 대화·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적어도 저희에게 토론의 기회는 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 기회도 주지 않고 야당 위원 입틀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나도 좀 이상하지만 이것은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신 위원장님은 지

금 어디로 가 계시는지, 합의도 되지 않았던 이런 현안질의를 허용하시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시고. 이런 상황의 국회를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 정말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중요한 현안,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어떤 토론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적어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물타기도 아니고.

좋습니다. 저도 그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 국회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큰소리, 목소리 높일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장관님, 오늘 아침 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치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장관님이 아시고 계시는 진실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전직 대통령의 이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오고 또 언론에 도배가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전직 대통령 인치하는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습니다, 오전까지. 어쨌든 이게 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시고 온 분이 SNS에 올린 글이 대단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프다. 구금된 독방은 불과 1.7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곳이다'. 그렇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접견을 하고 와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오히려 외부에서는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규모로, 일반 독거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1.7 혹은 1.8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것보다 좀 더 넓습니다.

○신동욱 위원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만 놓여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위험성 때문에 나무로 된 책상은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골판지로 안전하게 만든……

○신동욱 위원 통상적으로 골판지 책상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통상적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그리고 ‘성경책을 놓아서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사실과 다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신동욱 위원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 이 표현도 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거짓 글을 쓰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는……

○신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법무부장관님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대답에 대해서 아마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기사는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 특혜가 있다고 오해받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치소 현장의 저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단한 특혜를 베풀 만큼, 접견을—무법천지라는 표현을 쓰셨던데—무법천지를 허용할 만큼 그렇게 관대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나름의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좀 과도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구치소장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하면 처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수용자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지금 제가 좀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 후부터 취침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수의를 입고 접견한 것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질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장관님,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이렇게 버티는 행태라든가 이런 품격을 잃은 행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혼거실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받지 않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녁 9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고 또 하루에 몇 번씩 또는 매일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이처럼 관행에 어긋나게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좀 면밀히 해 갖고 위반의 점도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출정 기록을 제출을 안 해서 검찰 독재 유죄 선고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저는 인사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이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포스코이앤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 속칭 가연성폐기물 처리 사

업과 관련해서 늘어났던 운용 비용 78억 원을 광주광역시가 더 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그 중재가 일반 소송처럼 세 번까지 가지 않고 단심으로 끝낼 수 있는 데다가 액수도 7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을 좀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그 사건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신청한 그 액수를 확대합니다. 각종 손실 비용을 추가하고 2031년까지의 운용 비용 단가도 대폭 늘려 잡아서 무려 21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청 금액이 최초의 27배나 뛰는 이런 사례 장관님 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중재 관련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같이 중재에 있어서도 신청 취지, 청구 취지의 확장과 비슷한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하자고 해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찌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도망갈 기회,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사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의 의견을 듣고서 신청 취지 확대를 허락하지 않거나 만약에 기어이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다투도록 안내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광주에게 불의의 탈을 입게 하고 강제로 글로브를 낀 채 칼을 든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은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의 문제이든 운용의 문제이든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이 법무부인건 맞지만 일반적인 감독 권한만 있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재가 당사자가 합의해 갖고서 중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합의가 돼서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귀속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손실 비용 투입이, 확대돼 갖고서 일방에 불이익하게 나온 이런 처사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던 현안질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되는 방송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송법 중에서 위험적인 부분, 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당연히 위헌적인 부분, 법 정합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심의권을 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님, 이거는 방송법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 상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에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송의 편성권은 방송의 직접적인 영향을, 경영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편성권은. 이건 사유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이 편성권의 주체는 누구냐? 방송법인인 것입니다. 이건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성위원회가 제청해야지만 편성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고 또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 그것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가 여러 군데를 다 관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이 법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일뿐더러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위원장까지 다 선출해야지 그래야지 편성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만 선정하면 편성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형사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구체적 법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뭐……

○박형수 위원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적인 상식인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방송과 관련해서는 비록 민영방송 또는 보도전문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과 편성권이 가능한 분리돼야 된다 또 편성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은 계속 많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건 편성권에 관한 문제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결국 입법자인 우리 국회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은데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법이 시행되도록 한다라는 게 이게 법사위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특별다수제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인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장 추천을 할 때 사장을 선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돼요. 그런데 원래는 3분의 2로 하는 법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5분의 3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뭐냐 하면 14일 이내에 이걸 선출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특별다수제를 왜 만드는 겁니까? 특별다수제를 만드는 이유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특별다수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정족수를 특별하게 더 가중시켜 놓으면 그 가중된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법안이나 의안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다수결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특별다수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걸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어쨌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단할 문제고 제가 이거에 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아무 의견이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이 향후 재판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재판 사항 다 될 수 있지요. 아무 것도 답변 못하시겠네요.

……

○위원장대리 김용민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계속 현안질의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안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안질의만 별도로 하기 위한 회의를 저희가 연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고유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현안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위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고유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의 순서를 조금 뒤로 빼서 고유법 심사 마무리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법사위의 회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망한 체포 거부 사태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게다가 타 부처 소관 법률안까지 막 물어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구치소 다녀오셔서, 평일 9시 40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고 휴일에도 변호인 접견했다는 자료를 받아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 보면 구치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6시에 끝나는데 5시 반 정도만

돼도 좀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를 주기도 하고. 빨리 좀 가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변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일찍일찍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밤 9시 40분까지도 계속 변호인 접견을 하게 해 줬고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지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혜는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하셔서 살피실 게 굉장히 많겠지만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점몇 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게 3평이 넘고 4평 가까운 장소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골판지 위의 성경책' 이런 얘기 하는데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인지 옮기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왜곡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책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백 권에 이르는 책을 읽고 나오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장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치소의 과밀화 정도가 한 130, 140%에 이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아침 보고받은 바로는 한 127% 정도 됩니다.

○김기표 위원 127%인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보통 보면 혼거시설 5명 정도 수용해야 될 곳에 한 7명, 8명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겨울은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사람 자체가 그냥 난로처럼 돼 있어서 그로 인한 분쟁도 많고 그래서 교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3평 남짓한 공간을 쓰면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때 7월 17일 날 인사청문회 하실 때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남상소.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확실한 사건, 예컨대 대법원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든지 하는 사건에 있어서 2심이나 3심을 가도 결과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항소·상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구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실 그 결과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간 차가 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것과 똑같은 사건은 더 다퉈 볼 것이 없이 사실 결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피해자는 사실 하루빨리 그 돈을 받아야 되는 문

제가 있고 국가로서는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살펴보겠다,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실무자가 요새 인사 이동이 바뀌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얼마 전에 30일 날인가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는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주도로 상고 취하하고 이렇게 하기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같은 날 상고가 제기돼서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던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남상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하루속히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곧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기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소위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사용자 정의가 상당히 모호해졌잖아요. 현재는 어쨌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법 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금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죄형법주의로 사용자 정의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다. 그래서 유럽상공회의소 성명 나온 것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이 문건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또 성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앞으로 APEC이 열릴 텐데 이런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한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

무 과격하고 급격하게 이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결과적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언론이나 방송은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고 공정성과 독립성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노조와 합의하게 된다든지 또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권이나 이런 것을 회사 직원, 노조 쪽에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편성권은 방송에 있어서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한테 이것을 소비시키는 회사의 어떤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한테 편성권을 주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런데 경영진은 편성하는 데 별로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 주체가 아주 모호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저는 국민의 공기인 방송을 사실상 그 주인을 국민이 아닌 그리고 경영진이 아닌 노조라는 특정한 단체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가지고 법사위에 와서 처리된 법안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물론 정부의 전체 입법을 저희들이 관여할 책임이 있겠지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고, 특히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기초해 가지고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방송관계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처리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오랫동안 논의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장관은 자꾸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배숙 위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법무부장관 책임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법률, 이 법률이 헌법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이것을 바로잡아야지요. 저는 이것 되게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보도, '윤석열이 속옷만 있고 체포를 거부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게 아까 서영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이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진짜 뵈는 게 없는 행

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구치소의 상당한 방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2차 구속된 후에 점심시간도 넘겨 가면서 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 교도관은 밥을, 식사를 언제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교도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도관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1명인데 식사를 어떻게 하며 또 1차 구속 때는 9시 넘어서도 또 주말에도 했는데 그 담당 교도관들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3대 특검 종합 대응단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1부속실장이 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면회실이 아니고 조사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면회할 때는 접견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윤석열 특혜 여부를 조사할 때 접견부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7월 달 들어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접견부를 보니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어김없이 접견실에 갑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접견을 못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특혜 여부를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번에 윤석열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성이 폭로된 적이 있고 또 통일교 관련성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또 윤석열 총장 시절에 통일교 신도가 고발한 2200억대 배임·횡령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한 적 있습니다. 이 두 사건도 장관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님,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찰관실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인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귀연 판사는 4월 달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2주 간 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분명히 그때 처장님도 확인해 주셨지요? 지금 혹서기에 여름에 2주간 휴정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귀연 판사 재판부도 휴정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내란사건 재판하는데 특검이 겨우 구속을 해 가지고 6개월 연장을 시켜놨는데 이것조차 또 허비할 생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한여름 혹서기 또 겨울의 혹한기 여기서 법정 휴정제도 2주간의 기간은 2006년도 정도에 저희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변협에서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결정이 돼서……

○이성윤 위원 그래도 구속 사건이라든가 구속 피고인 특히 이 내란사범은 지금 국민들이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봐준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씩 재판을 해도 부족할 판에 휴정기 다 쉬고 언제 재판합니까? 더군다나 4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있고 또 8월 달에 덥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하고, 언제 재판을 끝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국민주권이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왕국, 법관왕국이라고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재판을 강조하더니 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 좀 건의해서 지귀연 재판부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내란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꼭 재판부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말을 전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조금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휴정기 중에는 저도 법관 일선에서 재판하면서 그 기간 중에 법관들 즉 재판부에서는 미제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 중간점검하고 또 심리 계획 세우고 집중검토하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하고 그래서 최근에 부당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궐석재판, 즉 증인신문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밝힌 계획이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판 이런 스피드로는 연말까지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특검이 추가기소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여튼 재판부에 좀 각성을 촉구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6일 만에 판결이 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 배당하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란재판만큼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귀연 판사는 휴가를 갔다고요? 참 한가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그 경위나 또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어찌 됐건 특검의 강제구인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재판받겠다라고 했던 그 수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참 내의나 입고 있고 추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가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진짜 할 말이 없거나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 지금 남아 있는 품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슨 옷을 벗고…… 진짜 한심하고요.

형집행법에도 수용자는 머리카락과 수용물 등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혹은 청결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 있는 것 아시지요, 청결 의무도 있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또 법무부 훈령에서도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육하고 단속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자 단속,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 갖고 잘 시행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

참 제가 태어나기도 전 사건입니다. 이영주 씨 남민전 사건인데요. 23세의 나이로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서 40일간 불법감금되었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허위자백까지 강요당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이 법원에 의해서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또 상고했습니다. 정말 죄가 중하고 정말 이건 도저히 무죄가 선고될 수 없다라는 검사의 소신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상고까지 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2차 가해 혹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3심 가서 무죄가 선고돼도 인생이 절단 난다 이런 표현 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괴롭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

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저도 장관 취임 이후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사실상 확정된 사건들 이런 것 관련해 갖고 양형을 다툰다든가 또는 특히 증거관계에 이견이 없는데 의례적으로 상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질의를 여러 번 했고요.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해 갖고 남상소하지 않게 했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단 상고가 돼 있더라고요. 다만 확인해 보니까 검찰에서도 처음에 재심 인용 의견을 냈고, 재심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했는데 다만 해당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부 공동 피고인의 자백 증언이 있고 그런 증거관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증명력을 좀 다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 갖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재판장들도 다 사죄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 좀 면밀히해서……

○장경태 위원 저는 검사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혹은 사건기록 검토 과정에서 약간의 의혹이 있거나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양형의 기준 같은 게 있고, 법원에서도.

혹은 이게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기소까지 해서 피해자를 이렇게 괴롭혀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할 수 있게 우리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잠깐 논의했던 해사전문법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여야가 그래도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해사전문법원에 대한 설치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과연 이 전문법원 전문재판부가 사건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심만 줄지 혹은 2심 같은 경우는 단독재판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2심까지 허용할지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부분 한 가지와 또 한편으로는 전문법원에 대한 설치를 한 특정 지역에 할 건지 아니면 인천과 부산에 할 건지 혹은 한 곳에 해 놓고 2개 지원을 둘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행정처 차장님이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했는데 저는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또 휴가기간이고 하니까 처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에서도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심판권의 범위라든지 또 관할의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문제를 선결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자료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2020년 8월 3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넘어서 특히 내란죄는 더욱 심각하겠지요. 이렇게 단호하게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했던 윤석열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갔더니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서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과 최순실의 닮은 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순실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 시절에 계속 소환 불응했습니다. 소환 불응하다가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 특검이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서 한 달 만에 특검 출석시켰습니다.

오른쪽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구인, 체포영장 집행 계속 불응하고 거부하고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옷을 벗고 드러누웠다가 집행 못 하고 가니까 또 자기가 옷 입고 변호인 접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게 실제로 당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수사팀장 누구였는지 아시지요? 이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다른 사람이 체포 불응하면 저렇게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법인데 왜 윤석열에게만 가면 과잉보호장치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특검이 풀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 법 집행과 관련해서 법무부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협조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교정 관계자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정말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 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앞으로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분들이 수사기관이 부르면 다 이렇게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다 옷 벗어 버리고 드러누워서 나 못 잡아 가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할 때 법 집행 안 할 겁니까,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집행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모스 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이것 문제 되는 것 아닌지 질의했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예를 들면 출국 명령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 갖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따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칠까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이……

그러면 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하고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박은정 위원님 하셨으니까 박은정 위원님 먼저.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최근에 대전·의정부·울산에서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했는데요. 내용 파악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잠정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대전의 스토킹은 살해가 됐고요. 의정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끝내 살해당했는데 경찰이 잠정조치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해가 됐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 1호에서 4호까지 신청을 했는데 4호가 유치장 및 구치소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1호에서 3호 가벼운 잠정조치로 끝내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지난 7월 30일……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30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관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면, ‘이에 대검찰청은’부터 한번 보시면요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잠정조치 전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는 이 스토킹 살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반복적으로 대검의 그냥 구태의연한 업무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무부에 잠정조치 호별로 기각한 통계를 좀 요구했더니 대검이 이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정조치를 신청하기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가 굉장히 이 피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잠정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고 심각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상 4호, 그러니까 유치장이나 유치가 필요한 상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잠정조치를 대하고 기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 사건이나 지금 또 대전

이나 이런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마 저게 대검 형사부에서 내려간 조치인 것 같습니다. 29일 날 피해자가 죽으니까, 살해되니까 30일 날 저게 내려간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형식적인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각 호별로 왜 기각이 됐고 그 호별로 통계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 사례를 제대로 분석해서 대검 형사부에서 각 스토킹 전담 검사들, 이 스토킹 전담 검사들이 스토킹만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담을 한 몇 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토킹 살인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챙기셔야 되고 통계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의정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잠정조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저런 조치가 나왔는데, 특히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유치장에 가두게 되면 나와서 다른 또 더 큰 보복범죄를 할까 봐 하는 이런 두려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검사가 1·2·3호 조치 경찰에서 했던 거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통계라든가 또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해 놓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김용민 우리 위원장께서 최순실을 체포영장으로 끌고 나온 게 윤석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안 한 게 없어요. 못 한 게 없어요. 그래놓고 지는 협조하는 것이 없어요. 체포영장이 와도 총까지 들고 저항하라 그러고, 비화폰을 마누라한테 주지 온갖 사람한테 주고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속옷 바람에 거부하고 있고, 자기는 최순실을 저렇게 끌고 나와 놓고.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대한민국 법무부가 특검이 윤석열 못 끌고 나온다면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참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에 이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최순실 씨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옷만 입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인치해서 끌고 들고나온다는 상황이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부끄럽습니다. 조폭과 양아치가 하는 짓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참 대한민국 부끄러운 일인데요. 목걸이는 6200만 원, 귀걸이는 2200만 원, 팔찌는 1600만 원, 브로치는 2600만 원, 어마어마한 걸 차고 정상회담에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던 사람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그런데 정작 딱 잡았더니 이게 모조품이라고 해요.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모조품도 수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저런 걸 차고 나가는 것도 망신스럽지만 그것이 모조품이라는 것도 망신스럽고 그것도 수천만 원이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게 협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묻지만 꼭 가서 협조하라고 접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상민, 이상민은 또 뭡니까? 이상민 집에는 에르메스 백 그리고 거기에 현금이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 사십몇 억입니까 삼십몇 억입니까? 대한민국에 에르메스 백 이렇게 집에 두고 있는 사람 몇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돈 그렇게 잔뜩 넣어 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방 한번 띄워 보세요.

가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개 내지 9개가 된대요. 에르메스 가방이 8개 내지 9개가 된대요, 이상민 집에요. 이 사람 소득신고, 아니 재산신고에 현금이 0원이라면서요? 그리고 이 가방 안에 택도 안 떼고 돈다발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샤넬 신발이 몇 컬레? 열두 켤레. 그런데 그게 김건희 신발이 아니라고. 왜? 김건희는 발이 260이라.

장관님, 발 크기 몇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265㎜입니다.

○서영교 위원 남자 발 265, 서영교는 240~245입니다. 260이라서 그게 샤넬 신발이 김건희 게 아니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그 관계자들 왜 이러는지 오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송석준 위원 마무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토론하실 건가요?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오늘 무더운 날씨, 지금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오던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

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29일 경제 8단체는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 이번의 노조법—오늘 통과된 바로 노란봉투법이지요—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경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동력을 이렇게 꺼져가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여당 위원님들 지금 구치소에서의 일을 갖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만 골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시겠어요?

우리 법사위가 그렇게 할 일 없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법사위에서 무너져 가는 경제 살리고 정말 시름하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나쁜 제도를 빨리 하나라도 정리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계는 울먹이면서 호소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국회, 그래도 마지막에서 뭔가 제대로 국민들을 지켜 줄 거로 기대받는 법사위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죽하면 주한유럽상의도 얘기합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우리 철수할 수도 있다’. 외국기업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AMCHAM)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한국의 투자 매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2025년 APEC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각에서 바른 소리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법사위 법이 아닌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보도하고 가짜뉴스 남발하고 있는 언론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언론이 어떻게 정상화돼서 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8인)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5)
	박형수 곽규택 조배숙	국민의힘(3)
법안심사제2(11인)	김용민 김기표 박지원 박희승 이성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6)
	◎박형수 송석준 신동욱 주진우	국민의힘(4)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8인)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박희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5)
	박준태 송석준 주진우	국민의힘(3)
청원심사(6인)	◎전현희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4)

임시회의록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형수 조배숙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출장 위원(1인)

박희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육부
차관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입시회의록